#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7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 : 한정애ㆍ아수진비ㆍ윤재갑

홍성국 • 고영인 • 조오섭

황운하 · 송옥주 · 박성준

홍정민 · 김교흥 · 이탄희

양이원영 · 서영석 · 윤관석

양기대 · 김경만 · 강선우

정청래 · 민홍철 의원

(2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가 있는 경우 동물의소유자 등으로부터 동물의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학대행위자를 교육·상담 등을 통해 교화하는 수단이 미흡함.

또한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 으로 금지되나, 해당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의 사유에 해당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의 타당성을 인정받 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에 사용된 사역견 사례와 같이 동물실험의 타당성 심의 등 동물실험윤리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대상 동물의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역동물이 인도적인 처우 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나.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호의2 신설).
- 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 마.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등은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 를 위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 수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호 신설).
- 사.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아.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동물전시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안 제34조의2 신설).
- 자.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사역동물"이라 한다)
- 가. 제23조의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적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동물의 소유권 상실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격리조치를 한 경우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소유권등"이라 한다)의 상실 또는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반복적 학대의 위험 방지 등 피학대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수 있다.
- ③ 학대행위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을 이유로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역동물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7항까지에서"로 한다.

⑦ 동물실험을 하는 자는 동물실험 횟수, 실험동물 사용량·입수경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 2.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3.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의 안전 확보 및 동물실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개, 돼지, 토끼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실

험동물의 공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를 적용한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물실험을"을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역동물
- 2.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
-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통보의무)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아니할"을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으로, "등에"를 "또는 위반사항등에"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2(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의 영업허가 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항 제5호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동물처리계획 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제28조제2항을"을 "제28조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	의 책무) ①
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	2
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
	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동물(이하 "사
	역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	3.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험</u>
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	<u>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u>
영 등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가. 제23조의 동물실험의 원

<신 설>

4.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지

 원에
 관한
 사항

나.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 적 사용에 대한 정보 수 집·관리·보급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동물의 소유권 상실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격리조치를 한 경우 법원에 학 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이조에서 "소유권등"이라 한다)의 상실 또는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가 있는 경우 반복적 학대의 위험 방지 등 피학대동물의 생 명,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필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략)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생 략)

<신 설>

요한 때에는 학대행위자의 해 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 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 다.

③ 학대행위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 에 대한 소유권등을 이유로 동 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 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현 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 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때에

②·③ (생 략)

<신 설>

⑥ (생략)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는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 양하여야 한다.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 제22조의2(사역동물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 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 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 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동물실험을 하는 자는 동물 실험 횟수, 실험동물 사용량·입 수경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 -----제7항까지에서

- 제23조의2(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동물실험시행 기관의 장, 동물실험시설 및 실 험동물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 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 2.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3.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

     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의 안

     전 확보 및 동물실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개, 돼지, 토끼 등 「실험동물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실험동물의 공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를 적용한다.
  -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 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 1. 사역동물 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 으로 하는 실험
-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2.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 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 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 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신 설>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 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물을 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 상으로 동물실험을--. <단서 삭 제>

- 인 동물을 포함한다)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 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생 략)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 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u>아니할</u> 때 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u>등에</u>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27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통보의무) 윤리위원회의 위원 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 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 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 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 조의2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u>③</u>	
<u>0</u> }1	니하거
나 제2항에 따른 조사 결	과 위
반사항이 확인된	
	<u>-</u> 또는
<u>위반사항 등에</u>	
제34조의2(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의

제46조(벌칙) ① ~ ④ (생 략)

<신 설>

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항 제5호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동물처 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처 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렁으로 정한다.
- 제40조의2(학대행위자에 대한 상 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감 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46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⑤ (생략)

-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u>제28조제2항을</u> 위반하여 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 물실험시행기관의 장

<신 설>

② ~ ④ (생 략)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	47조(과태료) ①
	<u>.</u>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3항을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